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제 목 2020년 군 구급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급시설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1. 구급시설 내 화장실 및 샤워실의 가림막 등 차폐시설 설치
2. 구급시설 내 보호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3. 구급시설 수용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 및 관련법을 준수한 별도의 변호인접견실 마련
4. 구급시설 내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지침 마련
5. 구급시설 내 거실현황표 및 수용자 연명부의 개인정보 노출방지안 마련

이 유

1. 방문조사 및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군 구급시설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환경 등에 대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군 구급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조사는 2020. 8. 5.부로 군 영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징계입창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간의 위원회 방문조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군에서 운영하는 구급시설로서의 기능과 군 미결수용자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2020. 6. 10.부터 7. 14.까지 총 6개 부대(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0사단, 육군 제0군단, 해군 ○○○○○○사령부, 공군 제00비행단)구급시설을 방문하여, 각 조사대상 부대 구급시설의 냉·난방, 거실, 화장실, 환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실외운동, 외부접견 및 전화사용, 수용자 권리 및 구제절차의 고지, 의료 조치, 식사, CCTV 촬영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각 부대는 국방부 ‘영창설계기준’에 따라 각 시설의 환경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적절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즉시개선이 가능한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는 등 위원회 방문조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었다.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중 각 개별 부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 구급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화장실 변기 및 샤워실 차폐시설의 개선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제0군단 구금시설에 설치된 소변시설의 경우 일부 거실 수용자에게 소변을 보는 모습이 노출되고, 샤워실에 설치된 각각의 가림막(칸막이)의 간격이 벌어져있어 수용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화장실 및 샤워실의 가림막 미비나 부실한 설치는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 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이라 함) 제5조는 군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화장실 내 소변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샤워실 차폐시설 설치위치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구금시설 내 수용자 안전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다. 이에, 해당부대는 물론이고 각급 부대의 구금시설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구금시설 내 보호실 설치 및 보호장비 구비

군형집행법 제82조는 ‘수용자가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의 경우에는 보호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실시한 방문조사 대상부대 모두 구금시설에 보호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금번 방문조사 대상 부대 중 육군 제0군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예산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군형집행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금시설 내 보호장비 종류(수갑, 머리보호 장비, 발목보호 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 중 수갑, 포승줄, 보호복 정도만 구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보호시설 및 보호장비의 미비는 일선 교도관 등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용자 보호조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수용자들을 비인도적인 수용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군 구금시설은 수용자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2020. 8. 5. 영창제도 폐지에 따라 추가 징계입창자 미발생으로 확보되는 여유 거실에 수용자의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호실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변호인접견실 개선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제61조, 균형집행법 제73조 등에 따르면,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군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구금시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모든 부대는 구금시설에 설치된 일반접견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접촉이 차단된 접견실에서는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사 접견교통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별도의 독립적인 변호인접견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변호

인 접견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방문조사 대상부대 대부분이 2019년도 미결수용자는 없거나 소수에 불과하고,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 빈도가 크지 않으며, 구금시설의 노후나 예산부족 등을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 미설치에 대한 이유로서 항변하고 있으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미결수용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가시불청(可視不聽) 등의 원칙이 준수된 별도의 변호인접견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군사경찰 무기 사용기준 규정 마련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문조사 대상 구금시설에서는 테이블건, 고무탄총, 전자충격봉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방문조사 대상 구금시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군 군사경찰 모두에게 공통되는 현상이다. 이는 군 군사경찰이 군형집행법 제88조, 「군사경찰 무기사용령」(대통령령 제3038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군형집행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안장비(전기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전자총 등)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사용기준, 사용상의 한계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사경찰이 사용하는 보안장비는 사용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용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인권침해에 이를 가

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별도의 공통적인 내부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사경찰 교도관들이 직무 수행 중 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장비의 사용기준, 사용요령,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수용자 개인정보 노출 관행 개선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제00사단의 경우 구금시설 수용자 거실 문 앞에 '거실현황표'를 제작하여 현황표에 소속, 계급, 성명, 출생년도, 죄명, 형명 및 형기, 번호, 입소일을 기재하여 당시 수용되어 있는 모든 수용자(징계 입찰자 포함)들에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군 ○○○○○○사령부에서는 징계입찰자 등 수용자에게 '가족통지 의사 확인서', '징계자 서명 등록부' 등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용자에게 서명 또는 무인(지장)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연명부 서식에 소속, 죄명, 계급, 군번, 성명, 가족전화번호, 통지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나중에 작성하는 수용자에게 앞서 등록한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인바, 조속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0. 10. 13.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

<별지>

관련 규정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73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군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제82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 장비
3. 발목보호 장비
4. 보호대(保護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제87조(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하려고 할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5.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6. 군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제88조(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할 때
2. 군수용자가 폭행이나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고, 교도관등이 그 위험물을 버리도록 명령하였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군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도주하는 군수용자에게 교도관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할 때
5. 군수용자가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할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을 때

2. 「군사경찰 무기 사용령」

제3조(무기사용 범위) 군사경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대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방위함에 있어서 그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방위할 방법이 없을 때
2. 여러사람이 떼를 지어 폭행하거나 또한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정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압할 방법이 없을 때
3. 중한 현행범을 발견하여 세차레나 정지를 명하여도 도주할 때. 다만, 생명상 위험이 없는 신체부분에 한한다
4.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폭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정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한 때

3.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제61조 ① 피구금자는 스스로 선임한 법률자문가 또는 법률구조제공자와 접견, 소통, 상담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시간,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지체·감청·탈취·검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법적 사안에 대해서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자국 법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법률상담 진행 시 교정직원의 감시는 허용되나 교정직원이 대화를 청취여서는 안된다.